

제42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5월7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
-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6)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3)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4)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9)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6)

상정된 안건

1.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2.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	2
3.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2
4.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6)	9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3)	9
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4)	9
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9)	9
8.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6)	9
3.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4

(14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관련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116조 1항에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직 선거법 제11조(후보자의 신분) 조항 제1항에 보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67조의 조항대로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로 선출된다는 국민 참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공판기일을 대선 선거 기간 동안 다섯 번이나 잡는 매우 이례적인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6월 3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대통령선거일에도 이재명 후보를 법정에 출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116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후보자의 신분 보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일단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과기환송심은 6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만 한번 타오른 사법개혁에 대한 불꽃은 사법부로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계없이 우리 법사위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개혁 입법, 사법개혁 입법 등을 원래대로 그리고 조희대 청문회는 예정대로 실시·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
3.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03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청문회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일명 사법 쿠데타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의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앉아 주세요.

○**유상범 위원** 정회를 한다더니 그냥 바로 진행을 하네.

○**조배숙 위원** 정회를 하신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었는데……

○**위원장 정청래** 정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밖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시겠구나 하고서…… 지금 기다리려고 했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면 최소한 말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일방적으로 하지 않……

○**유상범 위원** 그래서 내가 사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제가 지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을 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조배숙 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약속은 약속이지.

○**유상범 위원** 그거랑 지금 그 얘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지금 많이 못 오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누가요?

○**유상범 위원** 장동혁 위원, 송석준 위원 지금……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는 들어오셨는데 왜 지각하시지요? 국민의힘 다른 위원님들은 들어오셨는데 안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왜 지각하시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그래요. 그것 가지고 비아냥거리지 마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먼저 시작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못 들으셨기 때문에 의사봉을 친 부분은 다시 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청문회 관련 안건을 상정했고요.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의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 예, 이견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발언 시간은 간사님들, 3분으로 하시지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지금 한 며칠 전부터 민주당 위원님들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은 후에 그 반응에 대해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법리적인 면이나 그리고 또 지금 대선 한가운데에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까지는 저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판결을 했는데, 판사로서 판결을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그리고 또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태까지 우리 역사상 대법원장을 놓고 이렇게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 정당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이라는 분이 ‘이제 삼권분립은 막을 내렸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국민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원심 고등법원에서 이 항소심 기일을 15일로 잡았는데 이 판사에 대해서도 12일까지 뭔가 결론을 내지 않으면 온갖 현행법상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막겠다, 탄핵하겠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했다고 다수 입법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권력의 폭주를 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것 잘 보시고 과연 이런 정당에게 그리고 또 이런 후보에게 그 표를 줄 것인지 정말 우리 심각하게 정말 무섭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 다음 토론하실 분.

아니, 양 정당이 한 번씩 해야 토론 종결 동의도 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손을 안 들면 손 든 사람 시켜 주세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토론 종결 이야기부터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예, 할 수 있어요.

아니, 양쪽 당에서 토론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더 하든지 말든지 하고 토론 종결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한쪽 당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박준태 위원 민주당은 토론할 게 없지요,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토론이 필요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유상범 위원 아니, 우리 손 든 사람 시켜 주고 그다음에 민주당 손 들면 시키면 되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국민의힘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할 때 민주당 계속 시키려고 하면 왜 거기만 시키냐고 국민의힘 시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그건 손을 들었는데 안 시켜 줘서 한 거고, 손을 안 든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김기표 위원님 발언하세요.

○박준태 위원 희망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발언을 억지로 하고 있어.

○곽규택 위원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위원장 정청래 김기표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를 김기표입니다.

역사상 대법원장 청문회 없었지요. 그런데 역사상 대선 한가운데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고, 심판을 봐야 할 사법부가 마치 이런 것 아닙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갑자기 그 공 빼앗아 가지고 반대쪽

골문으로 골 치고 들어가는 그런 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곽규택 위원 퇴장 명령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퇴장 명령 못 하면?

○김기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정철래 잠깐만요, 곽규택 위원 조용히 하세요.

계속 발언하세요.

○김기표 위원 심판이 그렇게 선수로서 플레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찌 된 경위인지, 대법원장이 과연 다른 대법관 9명과 어떤 모의를 하고 어떤 작당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어떤 세력과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제1당의 후보를 아예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알아 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상 초유의 일은 이런 상황에서 계엄 나오고 이런 것도 다 그런 일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따지지 않고 지금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경찰한테 왜 등장했느냐 하는 것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법부가 본연의 사법소극주의를 내팽개치고 갑자기 정치 한복판에서 누구 일방의 편을 들 때 그러면 국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최고법원이 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대통령이 내란행위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도 우리는 대통령이 한 일이니까 다 참고 견뎌야 하는 겁니까?

○조배숙 위원 탄핵했잖아요!

○김기표 위원 그것을 하듯이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탄핵을 하듯이.

○조배숙 위원 그래서 헌법재판소 승복했잖아요!

○김기표 위원 조배숙 선배님, 조배숙 선배님 얘기할 때는 저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내란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 것처럼 대법원장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대법원장이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 수 있게 된 구조가 무엇인가,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사법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을 하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문회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고 그 원인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래 지금 법사위 밖의 복도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경위들께서는 물러가시라고 일단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하세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법사위가 그러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예민하고 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중에는 끼어들기를 평소 때보다 더 철저하게 규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면 국회법 제145조 1항에 의해서 일단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참조하시고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동영상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동영상 준비됐나요?

틀어 주세요.

(15시1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1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금 여러분이 늘 민주화를 할 때 초청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오늘 이 상황에서 너무나 들어맞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대선에 영향은 미치겠지요. 그러나 그 유죄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불리하다고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불러들이는 여러분의 행위는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이 낸 법이 뭐니까? 이재명 재판 중단법이 있습니다. 지금 행안위에서는 허위사실 중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법을 만듭니다. 결국 그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사건은 면소가 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사건 재판은 멈추겠지요.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만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법하고 만들어 가고 사법부 수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청문회를 열면서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이런 행태, 이게 삼권분립에서 사법부를 여러분의 압력에 굴복시키고 굴종하게 만들려는 여러분의 정치행위 아닙니까? 이 정치 만능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를 따라가고 있고 결국은 망한, 망해 간 아르헨티나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계엄 때문에 미래가 없어졌지요.

○**위원장 정청래** 제가, 위원장이 개입할 때는 국민의 인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팩트가 잘못됐을 경우는 제가 개입을 하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진우 위원** 위원장도 끼어들지 마십시오.

○**유상범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장 진행에 대해서.

○**박준태 위원**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유상범 위원** 일방적으로 종결해서 표결할 것을.....

○**위원장 정청래** 방금 말씀하신 영상,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부와 국민의힘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법 위에 있거나 법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 밖에서 불법적으로 일으킨 것이 비상계엄 내란이고요. 이런 걸 일으키면 안 된다고 지금 꾸짖고 계시고.

그러나 후보자의 신분 보장은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11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헌법에서 그 권한을 판결권을 쥐고 국회는 입법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국회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탄핵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가사 설령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국회에서 탄핵한 것은 불법도 아니고 남용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법하려고 하는 것이 헌법을 벗어났거나 법에서 벗어난 그런 입법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조희대 청문회도 국회법 제65조 1항에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를 법사위 의결로써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국회법 안에, 법 안의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방금 영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의힘을 오히려 꾸짖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며 국민들께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질의하세요. 토론하세요.

○**박은정 위원** 존경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맞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판결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었다고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판결은 그 말씀에 따라서 대선 기간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국민주권이라는 헌법가치를 대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린 판결입니다. 스스로 권위와 존엄을 무너뜨린 대법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3200명의 판사들을 모두 정치판사로 의심받는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왜 이 시기에 대선에 개입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그 판결 과정에서 위헌·위법함은 없었는지 반드시 국민들을 대리해서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해야 합니다. 반드시 저는 탄핵소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다음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이성윤 위원님으로부터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고요.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민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상범 위원** 뭐 더 이상 앉아 있을 필요가 없겠어요. 그만합시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곽규택 위원** 정청래 위원장!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박은정 위원** 정치판사 옹호하지 마세요!

○**이성윤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장경태 위원**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국민께 사과부터 하세요! 내란 일으켜서 잘못했다.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정청래** 잘 나가세요.

○**장경태 위원** 사과부터 하십시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성윤 위원** 사과하고 나가요!

○**박은정 위원** 정치판사들 옹호하지 마시라고.

○장경태 위원 줄행랑 칩니까, 국민의 힘? 줄행랑 힘이에요, 줄행랑 힘? 도망밖에 못 가요?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 계시고요. 냅두세요. 역사적으로 갈 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사라질 분들 사라지시고. 제가 강제 퇴장시키지 않았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토론 종결한 것이라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청문회와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의원실로부터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는 7개 기관 143건이고, 5월 14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오늘 오후 5시까지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조금 전 채택된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5월 14일에 실시되는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아직 나누어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간사 간 협의가 덜 끝났으므로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추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기 전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밖 복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뼈로 몰려와서 출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차관께서 들어오는 데 지금 지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국회 경위들께서는 해산해 달라고,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고지하시고 좀 물러가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6)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3)
 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4)
 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9)
 8.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6)

(15시26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범계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헌법 제84조의 내용을 고려하여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토록 수정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용민 의원 등 3인 외 188인이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순직 해병 사건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외 185인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외 185인이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범계 소위원장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법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 종료 후 출석 할 예정이라는 점 알려 드립니다.

지금은 법안에 대한 토론만 해 주시고 혹시 다른 현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들은 법안 의결 이후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관련해서요.

○위원장 정청래 하세요, 3분.

○이성윤 위원 이성윤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소위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임기종료 시까지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의견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이 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 범죄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는 무관함에도 공판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직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관련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발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격도 없는 피고인’,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 국민들을 이 정도……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의견서를 낼 수 있는지 저는 의심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의견서를 쓴 분이 누군지, 과연 장관이나 차관은 읽었는지 그

해당 담당자를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이름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저런 답변서를 누가 썼는지 자료제출을 이성윤 위원한테도 해 주시고 위원장한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법안 내용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한번 자구를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30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에 대한 겁니다. 수정안 6항에는 보면 즉 ‘피고인이…… 법원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뭔가 불확정적인 개념이어서 저는 이것을 제안드립니다.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런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명백하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1호의 경우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해서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라고 되어 있고, 2호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경우는 당선된 때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낙선한 후보, 당선한 후보 다 적용되는 건데, 특히 당선된 후보의 경우에는 1호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를 개표종료시까지로 하면 뒤에 ‘당선된 경우’에서 ‘당선된 때부터’ 사이에 이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이 확정될 때까지’ 이렇게 해야 1호와 2호 사이에 이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는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김기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당선 확정 때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은 불확정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공소기각의 재판’ 이렇게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김기표 위원 공소기각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라는 것이 그러니까……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명백’을 빼고 ‘공소기각의 재판일 경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김기표 위원 ‘재판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되잖아요.

○김기표 위원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명백하게’ 그런 걸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그렇게 그냥 ‘명백한’ 이런 것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됐고요.

그다음 토론하실 분.

○김용민 위원 제가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그 부분 좀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단서조항인데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뒤의 재판 정지와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재판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에는’으로 바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좋습니다. 그게 좀 더 명확하네요.

○김용민 위원 예, 그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1호와 2호의 법적 효과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1호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잠시 정지되는 개념인데 2호 같은 경우에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는 사실 재판이 중지되어야 된다라는 게 법적으로는 더 맞다라는 그런 해석도, 견해도 있어서 그 부분을 1호와 2호를 구별해서 1호는 정지, 2호는 중지로 구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위원장 정청래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지나 정지나.

○박범계 위원 아니, 그건 전문가 심리를 거쳐서……

○위원장 정청래 제가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다, 없다를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으로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부칙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다.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다.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군요.

다음으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군요.

다음으로 제21조부터 23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군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다.

다음으로 제6조부터 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군요.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다.

다음으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군요.

다음으로 21조부터 제23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58조제6항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한 축조심사, 공청회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 공청회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방금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회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43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3항 증인·참고인 명단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협의 결과 반대의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배부해 드린 명단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여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일정 제3항은 명단 중 증인의 경우 1번부터 17번까지 등 총 17명, 참고인의 경우 18번부터 21번 조영준 변호사까지 등 총 4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인의 경우 1번부터 17번까지 등 총 17명, 참고인의 경우 18번부터 21번 조영준 변호사까지 등 총 4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혹시 현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

의사일정은 다 됐고요 현안질의하실 분 손 들어 주시라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은정 위원님 먼저 5분간 해 주시기 바라고요. 5 플러스 1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지난 금요일 날 법사위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이 왔습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대법원에서 대법관들께서 이 문제된 사건기록을 검토하셨는지 그 로그기록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법원의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 65조를 근거로 드셨는데 제가 요청드린 것은 심판의 합의 과정을 공개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대법관들께서 이 사건기록을 읽으셨는지, 검토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이 자료가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그것을 읽었다면 로그기록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전산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그 자료가 없다는 것인가요, 전산자료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전산이든 기록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관들이—대법관을 포함해서—심증을 형성해 가는 과정의 일부이고 그것은 결국 합의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합의 과정은 비공개한다는 법원칙에 비추어서 저로서는 알 수도 없고 또 공개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행정처에서 '대법관님들 전자기록 보심, 다 보심' 이런 쪽지를 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검찰과 경찰 또 우리 법원이 원래 올해 6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형사전자소송법이 10월 달로 연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모든 법관들이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록은 종이기록이고 다만 편의적·임의적·보충적으로 전자사본화된 기록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질은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은정 위원** 잠깐만요, 처장님.

그러면 지난번 답변은 잘못 답변하신 거네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이제……

○**박은정 위원** 모두 스캔해서 전산으로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잘못 답변하신 것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정 위원** 잘못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로그기록이나 전산자료 스캔해서 보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닙니다. 종이기록은 당연히 다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스캔해서 보충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그와 같은……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 로그기록을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 전산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전산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 로그기록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지금 100만 명이 서명해서 대법원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질문 이후에. 대법원은 이 국민들의 요구의 엄중함을 인식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행정처장님, 이 기록을 48시간 만에, 이를 만에 대법관들이 종이기록이든 전자문서든 다 읽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그때부터, 이것이 9일이 아니라 3월 27일 날 상고장 접수되고 대법원에 기록이 접수되었을 때, 그때부터 아마도……

○**박은정 위원** 그러면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된 이전에도 주심이 아닌 대법관들이 이 사건기록을 보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이 설명을 나중에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법원조직법상으로는 모든 사건이 접수될 때는 일차적으로 전합사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주심이 정해지고 하면 그중에서 많은 사건들, 아마도 대부분의 사건들은 소부로 넘겨서 소부에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전합사건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박은정 위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도 안 됐는데 전합사건으로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셨다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회부가 필요 없이 들어올 때부터 전합사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법원조직법 보시면 그리고 대법원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모든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 사건은 전합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되는 순간부터 법적 또 내규적으로는……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 기록을 달라고요. 보셨다는 그 기록을, 로그기록이든 뭐든 기록을 제대로 모두 검토하셨다는 답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처장님께서. 그러면 12명의 대법관이 개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100만 명이 서명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산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전산자료를 내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대법관들이 이 기록을 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전산으로 기록을 보거나 종이로 보거나 모든 것이 기록 검토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관들이 일상적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그래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는 이 부분의 그리고 합의하는 부분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것이 왜 합의 과정입니까? 기록을 읽은 것이 합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법정에서 피고인, 혹은 원고나 피고를 볼 때 그분의 어떤 말씀이라든지 또 표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보고서 종합적인 판결을 하지만 그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밝혀라라고 하는 것은 법관에게 재판의 자율성·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증 형성 그리고 합의 과정의 일환이라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법령상 그리고 사법부 독립 또 개별 법관의 자율적·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곤란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사법부 독립을 지키시려면 그 판결을 하지 마시는 게 맞습니다. 그 판결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판결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고요.

○**박은정 위원** 저는 기계적으로 기록을 읽은 자료를 달라는 것이지 판사들의 심증 형성 과정을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전산자료를 내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확인할 게 좀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국민들은.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도 법원행정처장이 말씀하신 그 천금 같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 국민과 저희 국회의원들은, 법사위원들은 그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어떤 입김, 영향력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10명이, 2명이 그렇게 독립운동하듯이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무지막지하게 그걸 의지를 꺾고 판결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대선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후보직 박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고법까지 이렇게 진행된 것 아니냐, 그래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비양심적으로 독립적이지 않게 재판한 것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재판에 필요한 수사자료·공판자료는 다 살펴봤는지, 6만 8000쪽에 해당하는, 24박스에 해당되는 그 상자를 다 열고 재판자료를 읽어 봤는지, 1분에 한 장씩 읽으면 41일이 걸리고 한 장에 2분이 걸리면 83일이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잠 안 자고 24시간 내내? 과연 그걸 했는지 국민들이 지금 로그인 기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의 내 규대로 했는지 오히려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초인이 와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판기록을 다 읽었다는 것은?

그런데 이거는 시험문제, 시험지를 보지 않고 답안지를 쓴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직을 박탈시키고 한덕수 내지 김문수 당선시키고 윤석열을 복귀시키려고 한 사법부의 거대한 음모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얘기합니다. 뜻렷하다면 당당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으라. 판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뜻렷하다면 자료 다 제출하고 결백을 입증하십시오. 판사들은 헌법 위에 있습니까? 주권자인 국민 위에 있습니까? 언제부터 판사들이 그랬습니까?

문형배 재판관의 말대로 법관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의 헌법 제정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70~80년대 검사들이 건네준 쪽지, 공소장대로 판결문 쓰고 독재자들이 원하는 판결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혁당 사법살인 한 것 아닙니까?

자료 제출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한 말씀 안 듣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민 위원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기록 전자문서화 해서 봤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혹시 공판기록 말고 증거기록도 전자문서화 다 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때 제가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들과 유기적 일체가 되어서 기록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아시다시피 대법관과 또 재판연구관을 둔 모든 서양의 국가들은 법률심인 상고심의 특성상 대법관이 모든 기록을 다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관은 1심과 2심 판결, 상고이유서, 답변서, 거기서 나타난 적법한 상고심의 쟁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그런 기록을 보고 그와 동시에 병행해서 전속 혹은 공동조 연구관들이 모든 기록을 보면서 관련 있는 보고를 합니다.

○김용민 위원 처장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증거기록도 스캔했느냐는 게 질문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러면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올해 2025년 10월부터 형사전자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형사 전자기록화가 됩니다.

다만 그 전에는 기록본은 편의상 철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대법원에서는 올해 6월부터 그렇게 전자사본화, 즉 복사·스캐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기존에 상고심에 접수된 사건은 그 공판기록은 스캔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다만 수사

단계에서나 또 1심·2심 단계에서 스캔한 그런 기록은 아마 전자화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은 통일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용민 위원** 다시 말해서 증거기록은 스캔을 대법원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그게 스캔화되어 있는지 전자문서화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종이기록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종이기록을 복사한 적은 없다고 하셨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1심이나 2심에서……

○**김용민 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금 이따 다시 명확하게 말씀 주시고. 여기서 지금 팩트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번 청문회 때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확인하시고 답을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들으시면 큰 충격일 것 같습니다. 대법관들은 기록을 다 안 보고 일부만 보고 재판한다? 이 말을 일반 국민들한테 받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일부……

○**김용민 위원** 자, 내가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많은 사건이, 연간 10만 건 이상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4만 건 이상입니다, 접수되는 사건이.

○**김용민 위원** 예, 4만 건 이상. 그 많은 사건에 지금 재판이 걸려 있는 원피고 하면 8만이 될 수도 있고 공동피고인 하면 10만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법관들이 내 사건 기록을 안 본다, 이것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대법원이 하는 판결을 믿어라, 게다가 대한민국 최고법원이고 모든 재판부를, 모든 법원에 기속하는 판결을 하니까 기록은 안 봤지만 내가 한 판결은 믿어라, 내가 한 판결은 따라라, 지금 이것을 얘기하시는 건데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물론 대법관 수가 지금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사건은 많고. 대법관 수 늘리면 됩니다. 법원이 왜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법관 수 늘려 가면서 필요하면 전문법원으로 나누고 해서 이번에 사법개혁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판사가 내 사건 기록은 꼼꼼히 보고 판결한다는 신뢰는 이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록을 제대로 안 본다는 얘기는 내가 주장한 것도 안 봐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법관들이 기록을 어떤 건 보고 어떤 건 안 보고, 쟁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법원의 입장인 것이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민 위원** 국민 입장에서는 그 기록이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안 봐도 되는 기록으로 분류돼 버리면 내 주장이 아예 읽히지도 않는 주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기록을 다 안 봐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 기록은 대법관이 직접 봐야지요. 재판연구관이 본 기록을 가지고, 거

기서 요약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상고심……

○김용민 위원 그것은 재판연구관의 어떤 견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상고이유는……

○김용민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더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월 1일 날 4시에 사퇴를 해요. 3시에 이재명 대표 선고하고 4시에 사퇴하는데 그 전날부터 사퇴 엠바고를 걸어 놨습니다. 이것 알고 사퇴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법원의 판결을 미리 알고……

1분만 더 주십시오.

법원의 판결을 한덕수가 미리 알고서 전날 사퇴하기로 하고 엠바고 걸어 놓고 다음 날 3시 판결 이후인 4시에 사퇴 기자회견 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금시초문입니다.

○김용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매우 이상합니다. 수상합니다. 한덕수가 왜 굳이 국무총리직을 버리고 나와서 출마했을까 너무 이상한데 나와서 지금 하는 얘기도 개헌 하겠답니다. 지금도 개헌만 하고 임기 끝내겠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공교롭게도 3시에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4시에 사퇴 기자회견 했는데 보니까 그 전날부터 엠바고를 걸어 놨어요. ‘내일 4시에 내가 기자회견 하겠다. 사퇴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 그 전날이면 이미 대법원 전합체 결론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나와서 이재명 후보를 대법원에서 알아서 낙마시켜 주면 한덕수가 자연스럽게 국힘이랑 단일화해서 후보 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계산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시초문입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처장님, 판사는 진보 성향이다 보수 성향이다를 떠나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진보판사 따로 없고 보수판사 따로 없고 판사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진보판사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원칙주의자 판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왜 그랬대요? 왜 이렇게 무리수를 쓰면서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평소에는 용기가 없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용기를 냈답니까? 왜 그런 일을 저질렀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일각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의 하나가 조희대 대법관하고도 잘 아는 사이이고 윤석열하고도 잘 아는 사이이고 한덕수하고도 잘 아는 사이이고 그래서 내통한 것 아니냐,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이렇게 신속하게 파기환송하고 그리고 대법원은 법률심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심까지 하는 무리를 써 가면서 그래서 그 내통한 결과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이런 의심을 받는 것조차 사법부로서는 엄청 난 신뢰 실추, 신뢰 타격 아닙니까? 우리 법관들 스스로 많이 마음가짐 하면서 자세를 곧추 세우면서 오양나무 가지 아래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자, 보통 이런 것 다짐하지 않습니까? 오이밭에서는 신발 끈 묶지 말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양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그렇게 여러 번 맵니까, 신속하게? 스스로 자초한 것 아닙니까? 자업자득 아닙니까? 아니, 지금까지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한 역사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자업자득 아닙니까, 이것? 자초한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지금 법사위에서 불법적으로 무리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거가 없습니까, 저희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들으세요.

그 법대에 앉아 가지고, 높은 데 앉아 가지고 국민들 피고인 상대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려고 하지 마세요, 판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때예요. 뭘 잘한 게 있다고 지금 사과 한마디 못 하시면서……

이것 범난이에요, 범난. 사법 내란, 사법 쿠데타,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대선판에 사법부가 끼어듭니까, 결국은 6월 18일로 연기할 거면서?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법원 스스로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세요. 경청하세요.

그다음 질문하실 분,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지난번에 출석하셔서 ‘6만 페이지를 다 복사해다 훼손니까?’라고 묻고 ‘그것을 대법관들은 다 봤습니까?’라고 물으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그때의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재판기록이나 또 전자기록이나 이런 부분은 심증 형성 그리고 합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 수도 없고 공개가 안 된다는 취지, 그러면서 이 사건은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상고이유에 대해서 법률심이기 때문에 대법관이 전체 연구관들과 유기적으로 서로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행처 관계자가 ‘대법관들께서 전자기록을 모두 보심’ 이렇게 해서 쪽지를 하나 주기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종이기록을 갖다가 대법관들과 연구관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상고이유서 혹은 상고이유서 아닌 부분 이렇게 나눠서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자기록도 그러면 다 보셨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마치고 나서 확인한 결과 그것은…… 그때 기간이 뭐 9일이든 34일이든 길지는 않으니까 그때 종이기록을 어떻게 복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영교 위원** 우선 그때 말씀은 기니까 제가 또 이야기할게요.

그때 말씀은 ‘형사기록을 전자로 스캔해서 대법관들이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취지로 제가 그래서 아까……

○**서영교 위원** 말씀하셨어요, 취지든 뭐든. 그렇지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바로 다시 받아 적은 거거든요. 착오가 있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서영교 위원** 착오가 있었고. 그러면 이것 만약에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했다면 허위사실 유포네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마저 경위를 말씀드릴까요?

○**서영교 위원**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뒤에서 누가 그런 쪽지 줬어요? 그것 임기응변하라고 보낸 거예요? 다 허위사실 유포예요, 똑같이 얘기하면. 말하면서 ‘형사기록 전자스캔으로 대법관들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라며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 다 허위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서영교 의원실에서 질의했더니 박은정 위원에게 온 것과 똑같은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뭐라고 쓰긴 썼지만 이 답변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 6만 페이지 안 봤어요’ 이런 답변이에요. ‘우리가 본 것은 검사가 보내 준 상고이유서와 그리고 2심에서 낸 판결문을 가지고 봤어요’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취지……

○**서영교 위원** 우선 제가 말하고 나면 답변하세요.

이 답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백한 거예요. ‘우리 6만 페이지 다 안 봤어요’ 그리고 ‘뭘 잘 모르네요. 대법관들은 그렇게 기록 다 안 봐요’, 이게 대법관이 할 얘기입니까?

그래서 법원행정처장님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무게에 따라서 더 엄중하게 봤을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의 무게에 따라서 더 엄중하게 봐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장께서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다 본 것처럼 해 놓고 나중에 그러면 ‘로그인 기록 내. 당신들 어떻게 봤는지 확인해 줘’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사실 안 봤거든. 너희가 잘 몰라’ 이렇게 혀소리를 하니까 국민들이 ‘대법관들 다 못 믿을 사람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더 말씀……

○**서영교 위원** 제가 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국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그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서 9일 만에 판결 낸 사례를 본 적 있느냐, 이렇게 많은 엄중한 것을?’라고 물었더니 ‘제가 법관 하면서서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초유의 사태예요, 초유의 사태. 이 초유의 사태를 해 놓고 나중에 기록도 그리고 그 판결 낸 내용이 대법원장이 덜덜덜덜 떨면서 읽었어요. 과연 다른 대법관들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결을 냈으니 이들은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예.

○서영교 위원 선거가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선거가 시작하는데 5월 13일, 5월 15일 그리고 5월 20일, 5월 27일, 6월 3일. 6월 3일은 투표하는 날이에요. 거기에 이재명 선고가 있는 날이에요. 이것 말이 돼요, 안 돼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선거가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선거 결정되기 전이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문제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대법원에서 행정처장께서 나서서 이런 거 지금 선고 기일 변경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관여할 수 없다니요. 선고 기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야지요. 그러면 뭐 하러 법원행정처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오늘 이루어졌던 것처럼 개별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변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영교 위원 개별 재판부는 대법원장의 지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기일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화들짝 놀랐겠지요.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국민의 민심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실하게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대법원에서 확실히 놀랐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원에서도 확실히 놀랐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선거 개입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5월 15일 잡은 거 선거 개입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텐데요. 선거 개입이에요. 그리고 직권남용이고요 직무유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 중립의 위반이에요. 그게 위반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법원장이 주도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판사님들의 말씀처럼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야지 법원행정처장의 위치에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마저 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서영교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발언 시간 종료 이후의 발언권 여부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서영교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취지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서영교 위원 취지가 어디 있어요? 허위사실이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래서 우리 대법관들은, 외국의 모든 대법원과 대법관과 그리고 재판연구관을 둔 법제에서는 누구든지 상고 이유에 한정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상고이유서에 나와 있는 법률적인 쟁점, 즉 이 사실에 있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른바 분절적 평가를 할 것이나 아니면 종합적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것이나 그런 부분에 국한해서 심리가 그리고 판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 사람이 지난번에 6만 페이지를 다 읽었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래서 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대법관은 기록을 볼 거고 그렇지만 그와 무관한 기록 전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전속 또 공동조 연구관이 유기적으로 대법관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수시로 또 이런저런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대법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령 대법관을 얼마를 늘리든 상관없이 저희들은 이제.....

○서영교 위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번 사건.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질의가 끝났거든요. 본인이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선거 관여라고 하시는 부분은 이런 말씀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마는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을 피하는 순간 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예를 들면 선거운동기간 중에 판결을 할 건지 아니면 직전에 판결을 할 건지 생각해 보면 저는 대법관님들의 심중을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이 그 이전에, 한참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전혀 어떤 근거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고요.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지금 법원행정처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는 판사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개입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대법원 사태에 대해서 방금 코트넷, 법원 게시판에 올라온 현직 판사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판사가 방금 전에 올린 겁니다.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 시민들은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 내란 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느냐.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한복판에 내팽개쳤다’.

이게 지금 현직 판사가 방금 코트넷에,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면 이런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장의 지금 그 자세·태도와 달리 대법관들의 대법 파기환송을 규탄하고 있는데 이런 판사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모든 판사님이 재판에 있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을 항상 지지하고 또 강력히 보호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 그 말씀은 제가 돌아가서 전체를 한번 보고 어떻게……

○위원장 정청래 이 현직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희대의 판결 이 부분을 엄중하게 꾸짖고 있고 이 글 내용은 이재명 후보직 박탈을 위해서 대법원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보다 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더 엄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거냐라고 묻고 있고요. 대법관들이 모여서 대법원 얼마 전의 파기환송 이거 이렇게 해도 되냐, 대법관들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엄중하게 현직 판사가 꾸짖고 있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께서 들상 말씀하세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그 대법관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했을까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치적 악의를 품고 대선에 개입해서…… 아니,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해서 다른 대선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한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법관들은 정저지와(井底之蛙)입니까? 법관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판결하면 모든 국민들은 그대로 다 아무 말 안 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라고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세상 물정 모르고 판사들이 자기들만의 골방 민심, 우물 안에 갇힌 그런 편견을 갖고 했는데 그런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이성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지난 어린이날에 윤석열이 개 산책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시 한번 말씀……

○**이성윤 위원** 개를 끌고 산책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못 봤습니다.

○**이성윤 위원** 언론 보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윤석열이 보리밥집에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어린이날에는 개를 끌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도가 됐어요.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이 뭡니까? 사형·무기 맞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이거는 강도살인이라든가 강간살인범에 해당하는 이런 흉악범들이 저지를 때 그런 법정형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한가롭게 한강을 거닐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모든 피고인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확정되기까지는 일단 저희들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그런 흉악범…… 강도살인·강간살인 저지른 흉악범이 거리를 막 돌아다녀도 괜찮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보통의 경우는 구속이……

○**이성윤 위원** 국민들은 불안하겠지요, 특히 어린이날에. 이게 다 윤석열을 법원에서 구속 취소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처장님께 여쭸지 않습니까? 지귀연 재판부 휴가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지요? 휴가 갔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추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4월 25일 끝나고 5월 12일 날 2주간 쉬었는데 왜 쉬었는지 말씀해 주셔야 하잖아요. 왜 쉬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미처 아직 확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재판 한 달에 열여섯 번,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하는데 지귀연 재판부는 한 달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가롭게 재판을 해 가지고 언제 끝나느냐고요. 지금 중인이 몇 명입니까, 500명 넘는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재판부에서 적의 처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성윤 위원** 재판부만 믿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재판부 믿었다가 5월 1일 날 그렇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거예요. 저희들은 법조인으로서 30년간 이런 판결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란을 막아낸 이재명은 빛의 속도로 약착같이 유죄를 만들려고 하고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은 느긋하게 한강공원 개 산책하게 만들고, 이게 법원이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법원을 못 믿는 겁니다.

정말 더 횡당한 것은 5월 1일 날 오후 3시 반에 선고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그런데 다음 날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사건 기록 배당, 송부, 7부 배당, 공판기일 지정까지 짹 끝났어요. 이렇게 지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도 그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지만 아마도 장기간 연휴가 그다음에 되어 있으니까 아마 좀 서두른 것이 아닌가……

○이성윤 위원 아니, 당일 날 이렇게 사건 기록 접수, 배당, 재판기일 지정까지 다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일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란을 막아낸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짜 빛의 속도로 하고 윤석열은 느긋하게 하는지…… 저 사건은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고 촉구하는데도 윤석열은 그렇게 개 산책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원 코트넷에 여러 분이 지금 글을 올리고 있지요?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방금 글은 못 봤지만 그 전의 것은 봤습니다.

○이성윤 위원 안 보셨다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 한 건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 마지막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다 현직 법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정말…… 더군다나 이분들은 조회대 대법관 물러나라고 사퇴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전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저희들……

○이성윤 위원 사퇴 요구했어요. 이런 건의가 오면 처장님은 대법원장에게 건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그것이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반 법관이든 그 판결에 대해서는 오로지 판결로서만 또 법리로서만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취지에서의 어떤 신변의 정리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판사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나섰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분이 이러니까 나선 겁니다. 판사들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자유롭게 놔두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법정 선고…… 재판기일을 잡고, 그것도 다섯 번이나 잡고…… 이런 걸 참을 수가 없어서 대법원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가 무너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판사가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상 시기를 어떻게 하는 것은 이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오히려 그걸 갖다가 뒤로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더 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그리고 대법원 전합 판결 자체에서 이미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또 소수의견에서 통렬하게 다수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듯이 이 판결 자체가 모든 주장, 논거 그리고 견해를 다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은 이렇게 그 판결 자체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지극연 재판부가 왜 2주간 재판을 쉬었는지 그 사유를 다음에 꼭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하셔 가지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일단 확인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은 두 가지 방법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사퇴하든가 아니면 현직 부장판사들의 규탄에 의해서 쫓겨나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봇물이 터졌어요. 지금 보도 제목 한번 볼까요? “조희대, 사과하고 나가라” 현직 판사들 분노 터졌다”. 그리고 현직 판사들 지금 글 계속 올리고 있구먼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못 견딥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래도 국회에 나와서 나름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분 아닙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대법원장님, 사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더 창피당하지 말고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퇴 말고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자진사퇴하는 게 그나마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게 될 겁니다. 국회 민주당이 사퇴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가……. 지금 현직 판사들이 부글부글 별 얘기를 다 써 놓고 있구먼요, 너무 오만하다고, 사법부를 정치판의 한복판에 끌어들였다고,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할 거라고 오만한 판결을 한 거라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진사퇴만이 그나마 남아 있는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태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처장님에 대한 후배 판사와 법조인들의 평가가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존경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미담도 많으신데 지난 법사위에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서 매우 실망했답니다, 참담했답니다, 후배 판사·법조인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처장님 저러시는 분이 아닌데? 6일간 6만장을 다 봤다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시지?’ 깜짝 놀랐답니다.

3심이 1, 2심 판결 중에 선택하는 재판부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3심은 대법원에서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재판기록, 사건기록 다시 검토해야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재판연구관들의 연구보고서도, 기록을 전부 다 검토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재판연구관들이 써 준 보고서는 읽어 볼 것 아닙니까? 보고서도 안 읽어 보는 것은 아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보고서뿐 아니라 당연히 보고……

○**장경태 위원** 당연히 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1심·2심 판결, 상고이유서, 답변서, 보고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고이유서에서 상고심의 쟁점으로 된 부분, 관련된 그런 기록들을 봅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래서 저희가 그래야 할 대법관분들이 왜 사건기록, 재판기록도 제대로 안 보고 판결 하실까 이런 것에 대한 당연한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이례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는 보통 등록이 되고 공유가 되지요? 대법관분들이 다 보실 수 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들이 다 보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 보셨습니까,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당연히 그것을 대법관……

○장경태 위원 볼 수 있는 대법관이시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행정처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 안 봤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제척되셔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척은……

○장경태 위원 원래 다른 사건은 보시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처음부터 대법원 전합 여기에는, 합의 과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정처장으로서만 행정 관련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주 중요한 제보인데요. 과거에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는 다 공유가 되고, 등록하고 공유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유독 이 보고서만 공유를 안 했다고 하거든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은 아마도……

○장경태 위원 재판연구관들이 등록하는 사이트 있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대법관 할 때는 당연히 그것을 접속할 수 있는데……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만 조금만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재판부로서 즉 전원합의 재판부로서 그런 조치를, 예를 들면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입장에서는 전혀……

○장경태 위원 연구관들 십여 명을 조회대 대법원장이 별동대로 조직을 해서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유도 안 했답니다. 제가 그 재판연구관 10명 다 호명할까요?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처장님 이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해야 됩니다. 다른 여러 사건에 대해서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다 등록…… 등록 시점도 한번 보세요. 등록하고 다 공유하는데 이 사건만 이례적으로 공유도 안 하고 재판연구관을 따로 별동대 10명 조직해서 했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

○장경태 위원 그러면 다 징계 주실 겁니까? 처장님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하시면 후배 판사들이 피해를 받는다니까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을 조금 짧게……

○장경태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처장이기 때문에 저는 사법행정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관 보고서라든지 이 부분은 관련……

○장경태 위원 어떻게 어떤 근거로 10명이 새롭게 조직됐고 그 10명이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보고서를 급하게 쓸 수 있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유죄·무죄를 다투는 내용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대법원의 절차에 하자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태 위원 (고개를 끄덕임)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법관들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답변을 유기적인 어떤 일체로서 일한다는 그런 부분이, 연구관들이 대법관이 보는 상고이유 관련한 그런 기록 외에 나머지 기록도 보고하면서 이것을 대법관의 심증 형성의 일부로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연구관들도 대법관의 일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당연해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기 때문에 심증 형성 및 합의 과정의 일부기 때문에 제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이 연구관들이 어떻게 구성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언제 작성하고 등록했는지 또 이 해당 대법 재판에 참여하셨던 12명의 대법관들이 이 연구보고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정말 이 사건을 제대로 처장님의 중심을 잡고 처리하지 않으시면 저희대 대법원장은 진짜 사퇴는 물론이거니와 초유의, 대법원장이 현재 가서 탄핵심판 받아야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안 됩니다.

○장경태 위원 안 되잖아요. 이것은 대법원의 명예가 걸린 일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리고 재판연구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법원장이 시켜서 연구보고서 쓴 건데. 파기자판부터 해서 내용 다 있다면서요, 보고서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금시초문입니다.

○장경태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니까 재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재판의 내용까지는 관여하지…… 사전에는 못 하더라도 사후에 문제가 돼서 인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공개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만 말씀을……

○장경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사후에라도 저희들이 재판에 들어가서 기록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재판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태 위원** 아니,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는지만 봐 달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이 양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까지 제가 검증해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는지 재판에 대한 절차만 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다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염원을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나중에 수사받고 괜히 재판연구관분들만 처벌받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장님의 지금 중심 잘 잡아 주셔야 돼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지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지원 위원** 제가 어제 모 방송에 나가서 ‘평소에 존경하고, 그렇지 않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얘기를 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5선 국회의원 하면서 4선 동안 법사위원을 했고 지금까지 한번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승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지원 위원** 오죽하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저를 만나서 늘 사법부를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선대위나, 방송을 세 번 했기 때문에 가급적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처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국정감사 때 ‘사퇴하시라’ 그렇게 직격을 날렸습니다. 왜? 개혁을 하겠다고 대법원장 돼 가지고 개혁이 미진하지 않느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혁 차원이 아닙니다. 이분은 완전히 대한민국 사법부를 망쳐 버린 장본인이 된 겁니다. 법관들이 이렇게 내부망에 ‘나가라’, 못 견딥니다. 절대 못 견딥니다. 어떠한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경제는 시장을 못 이깁니다.

지금 처장님께서는 아주 난처한 그러한 표정과 답변을 하시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나라 사법부를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퇴를 해야 된다,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직 법관들이 이 나라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사법 내란의 장본인으로서 사퇴해야 된다는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지원 위원** 좀 전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지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그것이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일개 법관이든 어

느 법관이든 어떠한 이유로도 판결을 가지고 그분의 신상에 용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거나 그와 같은 요청, 요구가 이루어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추궁을 하는 것은 반드시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곧바로 신변 문제와 직결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평소 사법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재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박지원 위원** 미국은 판사를 신 다음으로,갓(god) 다음으로 저지(judge)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살인을 한 겁니다. 사법 쿠데타를 한 겁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계시겠다고 하면 5000만 국민의 손가락질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국민은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무엇이 그렇게 예뻐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자유를 이재명 후보에게만 특혜를 주느냐 이거예요. 얘기가 되겠습니까? 절대 용서를 못 합니다.

저도 한 이를 다 잡을 못 재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국민이 승리한 거예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것으로 알았지만……

1분 더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예.

○**박지원 위원**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리고 서울고법은 국민의 요구에 결정을 해 준 거예요. 대법원장이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고 파문을 일으켰다고 하고, 또 후배 법관들이 ‘당신 나가라’…… 말하기 전에 나가는 것이 법관의 양심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판을 받으면 대법원은 기록을 읽어 보지 않고 재판한다 하는 것만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쳐 준 것 아니에요? 나가라고 하세요. 못 견딥니다. 저도 오늘 지도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한 일을 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의하시겠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나가라고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김기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 날짜를 연기해서 그나마 법원이 이제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을 후회하고 철회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좋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좋게 해석을 하고 싶고, 그러나 참담한 마음은 금할 수가 없지요. 지금 행정처장님 여기 질의받고 계시고, 저도 법원에 친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법부 전체가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매지 마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사

실 오얏나무에서 오얏 훔치다가 잣끈 맨 것처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사회의 최종 분쟁해결기관으로서 신뢰가 있어야 할 사법부가 지금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행정처장님께서는 ‘판결로 인해서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판을 해야 될 사람이 선수로 뛰니까 ‘부정선수 나가’ 하니까 ‘나 심판인데’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사법부가 하신 일을 생각해야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으킨 일 그리고 거기에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대법관씩이나 되는 분들이, 9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동조해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 판결문 보십시오.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판결문 수준을 보세요. 그리고 그를 반대하는 반대의견이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사법부가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판결문을 처장님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제가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법부 전체,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사법부, 사회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해 줘야 할 사법부가 이제 정치 한복판에 나와서 ‘저 사람도 무슨 딴 꿩꿍이 있어서 저런 판결을 하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하게 됐어요. 저는 그것 자체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이렇게 저하시킨 것 자체로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이 결과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청문회는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왜 도대체 묵묵히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을 저렇게 모욕감 느끼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는지를 저는 명확히 확인하고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조롱까지도 있었잖아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 그것도 안 지킬 거다’. 세상에 대법원이 20일 안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법조인이지만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현실로 다들 믿었어요. 그게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이미 대법원은 그런 기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법을 확인하고 선언해야 될 대법원이 그 규정도 안 지킬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에 책임을 져야지요. 만약에 자기는 충심으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면, 대법원장이 그 정도 판단 하나 못 합니까? 그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행정처장님께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묻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기록을 봤다는 건가요, 안 봤다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했던 것처럼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기표 위원 하드카피로 복사는 안 됐지요, 기록이? 몇만 페이지 된다고 하는데요, 다 전자 스캔했다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스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의 제출된 문건은 시점으로 스캔이 되기 전이고요. 나머지……

○김기표 위원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꾸 답변을 끊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처장님은 ‘상고이유서, 답변서, 1·2심 판결문 이런 것 봤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드카피로 전달됐습니까, 스캔해서 전달됐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은 역시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도 없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것은 재판행정 관련이니까 확인해서 저희한테 답을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내용을 지금 알자고 하는 겁니까? 하드카피로 갔는지 스캔해서 왔는지 정도는 확인해 줘야지요. 확인해 주십시오. 행정처장님 말을 백보 양보해서 인정하더라도 그 정도는 읽어야지요.

그리고 저는 이것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재판을 한 것도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생각하지만 내용도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법관님들—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들 말이에요—녹음파일 들어 봤습니까? 이재명 피고인이 했던 말 그 말을 들어 봤습니까? 녹음파일 실제로 들어 본 대법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스크립트 보고 저는 판단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1분만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김기표 위원** 저는 스크립트도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백보 양보해서 녹음파일은 들어야지요. 왜 그러느냐하면 판결문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판례를 적시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이런 것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어찌고저찌고 블라블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들어 봐야지요. 텍스트하고 들어 보는 것하고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만 봤어도 그런 결론을 도저히 저는 못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제가 청문회 할 때도 한번 물어볼 겁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 음성파일을 들었는지.

대법원 판결하는데 1심과 2심 판결문 보고 둘 중의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까,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기표 위원**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2심 판결문 보고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면 된다’. 행정처장님 입장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상고이유로 들어 있는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상고심은, 법률심은 판단하는 것이고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1심과 2심의 사실인정을 원용하거나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1심과 2심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절적으로 평가할 건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평가할 건지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주로 법적인 쟁점이 되어서 심판을 한 것으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표 위원** 처장님, 사실인정에 대해서 지금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법원이 법률심인데 지금 사실인정을 한 것도 문제됩니다. 지금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청래** 추가질의하시려면 하시고요.

박범계 간사님.

○**박범계 위원** 쳐장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지금 서울고등 형사7부가 ‘대통령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 후(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임’, 이게 지금 이번 파기환송심 서울고등 형사7부의 입장입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범계 위원** 이 취지에 비추어서 지난번 대법원 전합체의 대법원장을 포함한 열 분의 대법관들이 판단한 것은 지금 절차적 판단이기는 하지만 형사7부의 이 기일 변경 수용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 입장은 적어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이랄까 그리고 대통령후보자의 신분 보장이랄까 참정권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제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먼저라는 판단인데 어찌 됐든 선거는 예정되어 있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며칠 전부터 곧 사표를 내고 대통령에 출마하기로 그렇게内外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쳐장님께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법원장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법부 독립의 취지입니다’라고 한들 저는 형사7부의 이 입장은 대법원 전합체, 대법원장을 포함한 열 분의 그 판단에 대한 정면적인 반기고 반항이고 도전이고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급심, 서울고등이라는 사실심의 최종심의 일선 재판부가 그래도 우리 법원이 지켜 오려고 했던 1차·2차·3차 사법파동에서 보여 줬던 그 기개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를 저는 천명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처장님은 적어도 이 전합체 사건의 회부와 선고에 관계가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그 대답은 너무 태연하다, 너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전국에서 들불처럼 법관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했던 이 판결의 목표가 달성되기는커녕 지금까지 유구히 흘러왔던 사법부 독립의 정신과 의지가 오히려 거꾸로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정치권에 의해서 사법개혁이라는 그것이 강요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법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쳐장님께서 돌아가셔서 대법원장께 이 사건의 추이와 상황이 간단치 않다, 국민 여론이 용납을 하기 어렵다, 일선 법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여론을 전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행정처장으로서의 제 직무에 대해서는 저도 언제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 재판부의 기일에 관한 결정도 당연히 그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으로 돌아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판부의 결정, 판결을 비

못해서 모든 판사,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똑같이 그 판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존중을 받고 그 판결에 대한 역사적인…… 그리고 이런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사실은 개별적인 판결에 있어서 혹시 당부당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과거에 어두웠던 시절에도 그래도 지켜 나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존중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배 법관들의 사표가 되어야 할 텐데 후배 법관들에게 끌려서 사표를 내게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처장님, 미국 법무부의 60일의 규칙, 식스티 데이즈 룰(Sixty days rule)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미국 법무부의 지침입니다.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 소환, 압수수색 그리고 그에 관한 일체의 공개를 삼간다’, 이것이 미국 법무부의 내부지침입니다. 모르셨습니까?

미국도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변을 보호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 116조도 공직후보자의 신변을 보장하고 있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것을 박탈하려고 했던 반현법주의자 조희대 원장은 후배 법관들에 대해서 끌려 나가게 될 겁니다. 결국은 사퇴하게 될 겁니다. 국민 여론도 그렇고 저 또한 ‘자격이 없다. 하루빨리 사표 내고 법원을 떠나라’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처장님,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동의하지 않지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는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동의하지 않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대법원장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자 오만이며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적법하게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는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되며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기본 원리는 동의하지만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판에 뛰어들었고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 근거들은 이렇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방대한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고 소부 배당 당일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사건 회부했고 대법관이 원심 판단 기록과 대조해 판단할 틈도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했고 선고 생중계를 알렸고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 다음 날 서울고법에 기록을 송부했고 고법은 즉각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에 변론기일을 지정했고 우편송달 절차를 생략했고 집행관 송달 촉탁한 일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의 뜻도 같지만 서울지방법원 김 모 판사가 코트넷에 쓴 글입니다. 제가 지금 죽 말씀드린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서울지방법원 김 모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쓴 내용이라니까요.

아까 제 의견인 줄 알고 굉장히 불편하셨지요, 처장님? 그런데 더 불편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현직 부장판사, 김 모 부장판사가 쓴 글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말 말고 빨리 사퇴해라 이런 뜻이에요.

1분 더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후배 판사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장 정청래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파기환송 재판부 오판이었다고,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현직 부장판사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관들은 법대 높은 데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내려다보니까 국민들이 다 피고인으로 보입니까? 무지성으로 보입니까?

이런 판사들의 오만, 이것을 고치라고 이 현직 판사가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기도 합니다.

판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헌법 위에 군림합니까? 법 밖에서 행군하고 있습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진 사퇴하느냐 아니면 현직 판사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느냐, 둘 중의 하나 선택해야지요. 자진 사퇴가 그나마 가문의 명예를 덜 손상시키는 일일 거라 생각하고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자진 사퇴하시라고 권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까 하신 말씀을 국민들이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모든 법관들은 그 판결에 대해서는 그 판결 자체에 대한 비판, 비평 그리고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야지 그 판결 하나하나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위원장 정청래 처장님,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그 판결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대통령 투표권, 참정권,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왜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후보직을 박탈했느냐 여기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 판결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하시라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장 정청래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들어오지 않았을 때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판과 또 판결의 대상은 그것이 선거든 아니든 동등하게……

○위원장 정청래 처장님, 아까 유상범 간사가 틀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 법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치에 개입했고 하는 부분을 노무현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금 같은 발언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본뜻을 모르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법을 어기고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직 판사는 불법적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서울지법 김 모 부장판사가 쓴 글이 불법입니까, 반헌법입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네요. 국민의 질책이 더 가혹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할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3분 추가질의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대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습니다.

1년 전에 윤석열과 조희대 간에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엄청난 제보를 받으면서 그때 그 얘기가 이번 판결을 보니까 이거구나라고 하면서 저에게 제보를 해 준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시초문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그렇지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해야 합니다.

1년 전에 윤석열과 만나서 이재명 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우리가 빠르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분이 이야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이번에 저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똑같은 사례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시초문입니다.

○서영교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은 이렇게 빨리 판결을 낸다면 모든 기록을 다 봐야지 그렇지 않음에도 이렇게 빠른 판결을 낸다는 것은 2심 판결을 그대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대법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흘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이든 누구든 사람들에게 마치 그렇게 흘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누가 흘리고 다녔는지 내가 지금 이름을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대법관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기억하세요. 이것 다 수사 들어가서 처리합니다. 그렇게 흘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마치 무죄 나올 것처럼 해 놓고 이렇게 파기환송시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이 기록이 2심 법원에 이렇게 빨리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3일 안에 기록을 보내도록 돼 있고 그리고 그날이 긴 연휴의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다음 날 보냈을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렇게 빨리 내려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이성윤 위원님 질의처럼. 그러면 그렇게 빨리 내려보내라고 한 자가 있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빨리 내려보내라고 했는지, 그리고 암묵적으로 여기에 빠르게 기일도 잡으라고 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처럼 한다면 선거가 있는데 기일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일 변경을 요구했지만 평상시처럼 한다면 기일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명을 그렇게 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것은 대선에 개입한 건데요. 경북의 민주당원 가입이 10배가 늘었습니다. 제주도의 민주당원 가입이 11배가 늘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그리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높아지고, 이재명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재명을 난도질하려고 대법원장이 뛰어들었고……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것을 내부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 거지 법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 확실하게 기억해 두십시오. 법관이 최고 지고지선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법무부장관께서 좀 늦게 참석하셨는데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법무부장관은 지금 한마디도 못 하시고 그만두실 것 같은데.

박은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은정 위원 예, 잠깐 법무부장관님께.

○위원장 정청래 예, 3분간 하세요.

○박은정 위원 장관님, 헌법 84조에 대통령이 내란·외환 외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는 규정의 법 해석학적인 법률안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법무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박은정 위원 반대의견을 내시는 건 좋은데 이게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 의견서에 보면 ‘학설이 나뉘고 있다’ 이렇게 기재가,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설이 나뉘고 있고 다수설은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부분에는 쉽게 동의는 잘 안 됩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다수설은 그렇다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게 다수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다수설은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반대를 하실 수는 있는데 반대를 하는 논거가 저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는 국민의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실현하는 그런 공직자고요. 그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국회에서 헌법 84조를 해석하는 의미에서 법 해석학적인 법률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반대를 하실 수는 있는데 대통령직을 ‘범죄 도피처’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의견서를 작성한 곳이 법무부 검찰국의 어느 부서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구체적으로 누가 작성했는지는……

○박은정 위원 아니요. 어느 부서냐고요, 법무부 검찰국의.

○법무부장관 박성재 이게 검찰국 공공형사과 아니면 형사기획과에서 했을 건데……

○박은정 위원 공공형사과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니, 그 둘 중에 어느 하나인데……

○박은정 위원 공공형사과하고 또 어디라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형사기획과.

○박은정 위원 형사기획과요. 형사기획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공형사과일 수도 있고요.

‘범죄 도피처’라는 표현이 공공형사과 혹은 형사기획과에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차관 혹은 검찰국장, 법무부장관이 이 표현을 넣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범죄의 도피처라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누가 냈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박은정 위원 예, 중요합니다.

국민을 대리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하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글쎄, 저도 이 의견……

○박은정 위원 장관님이 이 범죄 도피처라는 표현을 넣으셨습니까?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표현이거든요.

저 뒤에 앉아 있는 법무부차관이 넣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장관이 넣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은정 위원 장관이 이 표현을 쓰셨냐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이 표현을 쓰지는 않았고요.

○박은정 위원 그러면 공공형사과나 형사기획과네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의견입니다, 의견.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의견을 누가 썼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에서 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법무부의 어느 부서에서 했냐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누가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은정 위원 공공형사과나 형사기획과에서 올라온 표현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고요.

박범계 간사님.

○박범계 위원 박성재 장관님, 오늘은 지난번처럼 웃음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재는 장관께서 하신 거잖아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결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보고받고 답 그렇게 보내드리면 되겠다고……

○박범계 위원 한동훈 전 장관 많아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박범계 위원 한동훈 전 장관 닮아 가는 것 같아요.

결재를, 결재 사안인지 보고 사안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렇게 이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오늘 제출된—오늘 제출됐는지 모르겠지만—이것이 그러면 장관의 의지, 의사와 다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확실합니다.

○박범계 위원 비슷해지네, 점점. 점점 비슷해져요, 한동훈 전 장관이랑.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한 장관이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장관님, 이 의견에 반대하는 건 알겠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로 범죄의 도피처라고 하면 이 의견에 장관님 결재가 없다 하더라도 설사 보고가……

보고받았습니까, 일단?

○법무부장관 박성재 이런 용어를 쓴 문서를 제가 읽어 보고 했는데 이 관점에……

○박범계 위원 읽어 보셨지요? 그러면 장관님이 법무부장관이고 그게 장관님의 의견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렇게 해석하시면 그렇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름으로, 법무부 이름으로 들어온 것은……

○박범계 위원 아니, 좀 무게 있게 책임감 있게 이것……

○법무부장관 박성재 다 법무부장관의……

○박범계 위원 누가 기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법무부의 이름으로, 더군다나 법안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률안이에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 의견으로 제출된 것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법률안에 대해서 적어도 법무부의 의견이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법무부 의견……

○박범계 위원 이 안에 표현돼 있는 것은 누가 기안을 했든 간에 ‘내 권한이고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박범계 위원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 의견입니다.

○박범계 위원 맞아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법무부 의견입니다.

○박범계 위원 법무부의 의견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박범계 위원 그런데 기안은 누가 했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형사기획과장하고 친합니까? 내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형사기획과장하고 좀 불편한 관계라고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형사기획과장하고 제가 불편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박범계 위원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형기과장이 기안을 했을 가

능성이 높은데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그걸 공공형사과에서 했는지 형사기획과에서 했는지 지금 이 안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형사법제과에서 했는지……

○**박범계 위원** 장관님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최종심 법원에 의해서 기소된 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을 부정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닙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왜 범죄의 도피처라고 인정을 하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박범계 위원**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공판 절차를 잠시 중단한다는 의미인데 왜 그걸 범죄의 도피처로 표현해야 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린 건데 대통령의 형사소추권 면제에 대해서……

○**박범계 위원** 더더군다나 저 뒤에 있는 법무부차관은 이거는 특정인을,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예.

○**박범계 위원** 특정인 혹은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판받는 혐의 대통령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소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그런데 검찰이 혐의를 줘 가지고 수사를 한다든지 혐의를 줘 가지고 기소하면 그것은 범죄와 범인이 확정되는 겁니까? 장관의 머릿속에는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헌법 지식과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사법 체계에 대한 지식이 그런 겁니까?

장관으로 대표되는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정말로 우리나라 검찰, 정말로 수사해서 기소하면 그것은 범인이고 공판 절차를 중지하면 범죄의 도피처가 된다는 그러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래도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이 왜 아래 했는지 말씀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다 하지 않았어요?

○**박범계 위원** 안 듣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여러 마디 했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장님, 늘 하시던 말씀이 이렇게 하면 기회를 달라고 하면 기회를 줄 텐데, 질의를 할 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 놓고 지금 답변할 기회는

한번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해 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볼게요. 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형사소추권 면제라는 규정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의 해석에 문제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저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제일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기 우리가 말씀드린 범죄의 도피처라고 하는 부분은 제도는 주어가 누구든 목적어가 무엇이든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인데 이 조문 해석상으로만 보면 살인·성폭력 등 모든 범죄를 포함시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에 대한 의견으로 범죄의 도피처로 될 수도 있다 하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요.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자, 됐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위원장 정청래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장관,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을 아니할 수가 없네요.

헌법 11조가 무엇입니까, 내용이?

○법무부장관 박성재 평등의 원칙인가요?

○위원장 정청래 평등의 원칙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위원장 정청래 84조가 뭡니까? 형사불소추권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위원장 정청래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이거지요?

11조와 84조가 왜 충돌하고 있는지 아세요? 답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대통령의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더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 몇 조에서 보장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위원장 정청래 헌법 몇 조에서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 쓰고 있느냐고요. 헌법 몇 조나고요, 대통령의 직무. 저도 지금 헌법 조항 안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니, 그건 제가 지금 조문을 보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모르시네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66조입니다, 국가의 계속성.

외국을 대표하고 행정부 수반이고 조국 통일의 책무를 지고, 헌법 74조 국군 통수를 하고.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위원장 정청래 대통령의 이런 직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것, 형사불소추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5000만 국민 중에서 단 한 사람이 헌법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란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84조 형사불소추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는 예외예요. 그래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파면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이 헌법상으로는 강도죄를 저질렀어도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5년간은 재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 여론은 다르게 갈 수도 있겠지만 헌법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5년간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한 다른 어떤 흉악범죄도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재판을 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해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법무부장관처럼 그렇게 빼딱하게 이 부분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법무부의 공식 문건 답변자료에 범죄 도피처가 뭐니까? 그렇게 법무부에서 거친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직원들이 다 동의할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의 특별한, 윤석열과 매우 친한, 윤석열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내란 세력의 일원 중에서 그런 의견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많은 법무부 직원들이 그 표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있겠지요. 있겠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이 표현의 적정성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논쟁을 할 의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견을 달리 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박성재 장관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이제.

그건 그렇고요, 법원행정처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이번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조희대, 윤석열, 한덕수 등과 내통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지, 왜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내란 때 공개적인 어나운스(announce), 공개 반대 표현을 안 했어요. 심지어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도 법원행정처장 시켜서 서부지법에 갔지 본인은 거기서 즉각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기환송심 보니까 이 판결문을 읽는데 덜덜덜 덜덜덜 떨고 있어요. 평소에 이렇게 손 떨니까, 안 떨니까,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한말씀만 드리면……

○**위원장 정청래** 아니,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대법원장 평소에 손 떨어요, 안 떨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그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

○**위원장 정청래** 몰라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판결문 읽을 때 손 덜덜덜 덜덜덜 떨고 있었던 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 의지가 아닐 수 있겠구나, 저 파기환송심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내란 세력과 어느 정도 친한지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내란과 관련해 계엄 선포 전 정부,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받은 연락·협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주고받은 구두 수신이나 공문서가 없어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왔고요.

‘내란과 관련해 계엄 선포 후 정부,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연락·협조 지시사항 등 계엄 선포 전후 대법원장에게 전달·보고된 정부,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받은 연락·협조 지시사항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있었구먼요.

‘유선으로 계엄사로부터 법원 인력, 법원 사무관급의 파견을 요청받았고 검토 후 통보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결국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즉각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검토 회의를 했어요. 검토 회의를 하다가 계엄이 해제됐어요. 그래서 파견을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계엄 해제되기 전에 회의를 했구먼요, 즉각.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간부회의에서 파견 여부의 적절성을 비롯하여 사법부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던 중’ 이렇게 나와요. 검토한 게 맞아요. 계엄 해제되니까 ‘어우, 잘 됐다. 아이고’. 그리고 파견 안 하는 걸로 결정됐는데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결국은 피동적으로 안 하게 된 거지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검토하고 파견했을 것 같아요. 이게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적 스탠스, 정치 성향.

아까 서울중앙지법 김 모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투쟁 선봉이라고 고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트넷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의 조희대 대법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 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이런 파기환송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민 거다,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한말씀……

○위원장 정청래 제가 추론했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더 추가질의하실 분?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균택 위원 처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파기환송심에서 대선 이후로 재판을 미룬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위가 어떻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 준 것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2일 선거 기간 동안 다른 사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건이, 그러니까 위증교사 그리고 대장동 사건 두 건……

○위원장 정청래 지금 그것도 연기됐습니다, 대장동.

○박균택 위원 대장동, 그러면 위증교사는……

○위원장 정청래 지금 속보 떴어요.

○박균택 위원 위증교사도?

○위원장 정청래 위증교사는 아직 안 떴고요.

○박균택 위원 안 했습니까? 그건 1심에서 무죄가 났던 사건인데 그런 것들도 계속 진

행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좀 일선 재판부에서 살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와 같은 각 재판부의 기일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중해야 된다는 점 또 남은 재판부의 결정은 어떤 결정도 저희들이 존중해야 한다는 그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래도 유무죄에 관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대선의 시기에 사법부 전체가 오해를 받고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 이런 일정 지정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재고해 보도록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행정처나 또 법원장님이라는 그 존재가 왜 필요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희승 위원님.

○**박희승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어서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은데 저도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듣고 있기가 괴로웠습니다.

어쨌든 2심 환송심에서 재판 기일을 연기해서 다행히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안 받는 상황을 만들어 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저도 어디 방송에 나가서 법원을 믿는다, 법원은 대법원 따로 또 고등법원 따로 지방법원 따로 각자 재판부에서 자기 소신껏 재판하는 기관이다 했는데 변경 신청서를 받고 그런 결정을 해 줘서 다행히 법원의 체면을 세워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법원에서 이번에 그런 이례적인 기일 지정 그다음에 전원합의체 회부 또 신속한 판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의혹을 사고 있는데……

나는 또 대법원장님의 소송 지휘는 뭐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관여한 우리 대법관님들, 대법관님들도 다 재판을 정말 삼사십 년 이상 하신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인데, 저도 그분들 중에 몇은 청문회에도 관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합의를 할 때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냈더라면 이렇게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이런 오해를 안 샀을 텐데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누가 주도했다고 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제가 지금……

저는 결론이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저렇게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의 속성상. 그런데 절차 면에서 적어도 이렇게 견해가 갈린 경우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데 거기에 왜 어느 대법관도 제동을 걸지 않았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 합의에 참여 못 하겠다 이렇게라도 선언하고 시간을 달라, 보름이든 한 달이든. 그런 숙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국민들한테 이런 오해를 과연 샀을까……

그래서 이러한 재판, 기록을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이런 오해를 안 사게 재판을 했었어야 될 텐데 그 훌륭한 대법관들이 왜 그러한 판단을 못 했는지 아니면 정말 고등법원부장판사까지는 훌륭한 법관이었다가 대법관이 되니까 사람이 작아져 버린 것인지 정말 이게 저도 통탄할 노릇입니다.

저도 엄청나게 법원을 믿는다는 소리 했다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리 행정처장님께서 크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앞장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법원에 계실 때도 존경받는 선배로서 저희들이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결론의 당부에 대해서는 이제 관여하지…… 언급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예를 들면 너무 좀 신속 급속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전합 판결의 다수·소수, 특히 소수 의견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 자체가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판결이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 그리고 했다고 하면 시기를 더 늦췄을 때의 경우, 이렇게 빨리했을 때의 경우 어느 경우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법관들께서, 아마 고민 끝에 다수 대법관들은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해 봅니다.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저도 행정처장으로서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자꾸 제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법원행정처의 답변은 팩트가 틀렸어요. 조회대 대법원장의 평균 평균 환송심이든 고등법원에서 올라와서 처리하는 게 보통 90일 안팎이었어요. 그냥 90일만 지켰으면 돼요. 누구한테 비판하거나 비판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재명 재판만 36일로 당깁니까?

조회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요 고등에서 대법까지 그 재판 기일이요 평균 기일이 더 늘어났어요, 전임 대법원장 체제보다. 90일 이상 걸린 문제를 왜 유독, 다른 것은 90일 이상 끌었으면서 이것만 왜 36일째 기어코 해야만 했는지…… 관례를 깬 것은 불공정하다고 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 말대로 6·3·3 지키지요. 왜 안 지켜요? 6·3·3의 마지막 3이 30일입니까, 3개월입니까? 3개월이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3개월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왜 3개월 안 지키고 30일 만에 하냐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6·3·3 원칙도 안 지킨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대법 판결은 3개월로 하고 이재명은 30일로 한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예요.

그것도 대선 후보에게, 그것도 대선 선거운동 기간 20일 남짓에 다섯 번을 재판정에 나와라? 그리고 9일 만에 초고속 울트라캡송 인터넷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판하고 또 고법에 내려보내고.

그리고 왜 우편 송달 안 합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보통 우편 송달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재명 이 사건만 집행반을 내 가지고 송달 서류를 갖고 따라다니면서 이재명에게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계속 파발마처럼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받으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 다 우편 송달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재명만 우편 송달 안 하고 집행반 직접 파발마처럼 뛰어다니면서 받으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후보직 박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처장님, 대법원장의 속셈을 처장은 말하지 않겠지만, 말할 수 없겠지만 다 알아요, 국민들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한 가지만 말씀……

○위원장 정청래 대법원,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법사위 회의는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개최될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7인)

성명	직업	사유	신청위원
조희대	대법원장	2025도4697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관련 질의	장경태
오석준	대법관	2025도4697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관련 질의	박범계
신숙희	대법관	2025도4697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관련 질의 2025도4697 관련	박범계 박은정
엄상필	대법관	2025도4697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관련 질의	서영교
서경환	대법관	2025도4697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관련 질의 2025도4697 관련	박범계 박은정
권영준	대법관	2025도4697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관련 질의	서영교
노경필	대법관	2025도4697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관련 질의	박범계
박영재	대법관	2025도4697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관련 질의 2025도4697 관련	서영교 박은정
이숙연	대법관	2025도4697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관련 질의 2025도4697 관련	박범계 박은정
마용주	대법관	2025도4697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관련 질의 2025도4697 관련	박범계 박은정

성명	직업	사유	신청위원
이홍구	대법관	2025도4697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관련 질의 결정 관련 비판 등에 대한 증인 견해	서영교 장경태 김기표
오경미	대법관	2025도4697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관련 질의 결정 관련 비판 등에 대한 증인 견해	서영교 장경태 김기표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재판사무, 전자소송 등 사법시스템 관리/운영 대법원 전산자료 관련	장경태 박은정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판실무	박범계
정상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재판실무	박범계
서석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석열의 서울법대 동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와 친분 두터움	박범계
정윤형	대법원장 비서실장	2025도4697 관련 증인의 역할, 재판 진행과정 및 관련 비판 등에 대한 견해	김기표

참고인(9인)

성명	직업	사유	신청위원
이성민	법원노조위원장	재판거래 의혹 제기 성명서 관련	서영교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고, 재상고절차 관련	이성윤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행위 지적, 국회에서 저지할 수 있는 방법	서영교
조영준	변호사	2025도4697 사건 관련 헌법소원 제기	박은정
황도수	대학교수	헌법 84조, 사건기록 검토 등 질의	유상범
이주원	대학교수	헌법 84조, 사건기록 검토 등 질의	유상범
이충상	변호사	헌법 84조, 사건기록 검토 등 질의	박준태
장용근	대학교수	헌법 84조, 사건기록 검토 등 질의	박준태
이호선	대학교수	헌법 84조, 사건기록 검토 등 질의	박준태

○출석 위원(16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박군택 박범계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박희승 서영교
유상범 이성윤 장경태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은정

전문위원 이화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박성재

차관 김석우

○법원총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